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1-08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 -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나306378(본소) 손해배상(기)

2024나306385(반소) 손해배상(지)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범식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피고, 피항소인 1. C

2. D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임애리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현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가소269048(본소), 2024가소
203496(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들(이하 피고 B, C, D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¹⁾).

나.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B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²⁾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 B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1) 소송상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참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감축) 신청서가 2024. 11. 18. 피고들에게 송달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부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택한다.



나. 피고 B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웹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2022. 3. 3. 그림 작가인 피고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되고 레퍼런스 그림³⁾이 첨부된 발주서를 보내며 추후 온라인 플랫폼에 출간 예정인 'E' 작가의 웹소설 'F(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 표지 그림 제작을 의뢰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대금 950,000원의 이 사건 소설 표지 그림 제작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 제작기간 : 2022. 3. 4. ~ 2022. 4. 3.
- 제작과정 : 러프 → 컨펌 → 1차 완성 → 컨펌 → 최종 완성
- 제작비용
 - 계약금 : 50%(선입금)
 - 잔금 : 50%(컨펌 완료 기준 최종 완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 기타사항
 - 당사 정식 연재 전까지 완성본 수주사 개인 SNS 업로드 지양

3) 참조 그림을 의미한다. 원고가 보낸 레퍼런스 그림 중에는 피고 B이 이전에 그렸던 그림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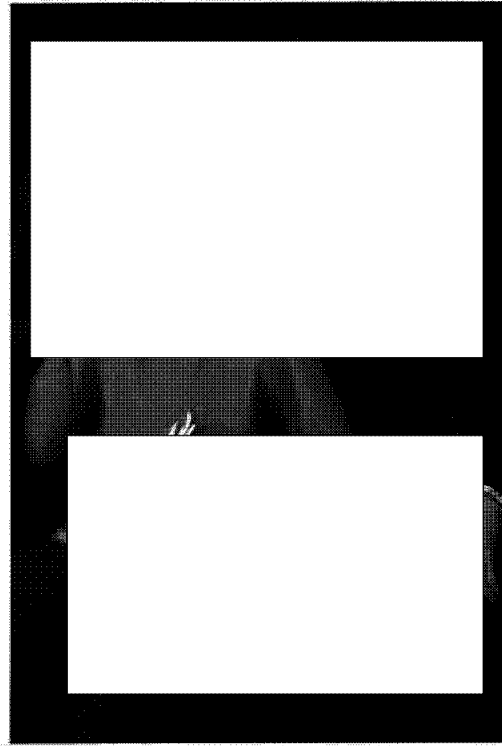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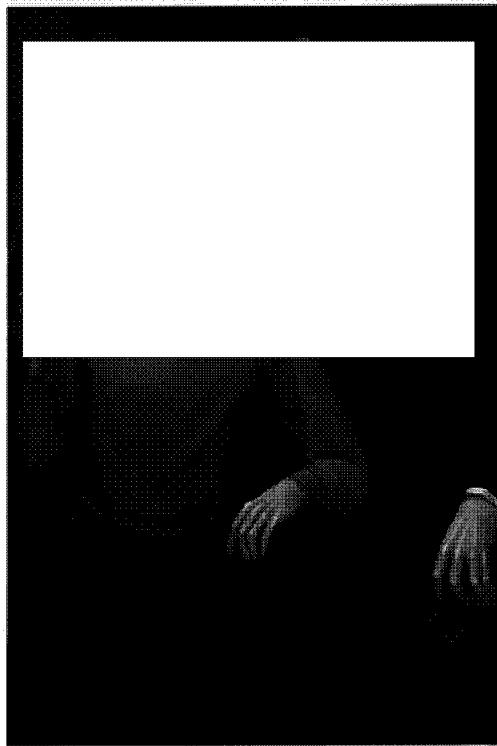
- 당사와 원활한 소통관계 유지
- jpg, 원본 필요
- 그림의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허락, 동의 없이 활용 금지

나. 원고는 2022. 3. 3. 피고 B에게 계약금 475,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은 표지 그림 제작에 착수하여 2022. 3. 10. 원고에게 1차 작업물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3. 14. 피고 B에게 위 1차 작업물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을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 B은 2022. 3. 21. 원고에게 수정 작업물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3. 21. 피고 B에게 위 수정 작업물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을 다시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 B은 2022. 3. 24. 원고에게 완성 작업물(이하 '이 사건 그림'이라 한다)을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3. 25. 피고 B에게 '그림 너무 잘 그려주셔서, 이대로 픽스하면 될 것 같아요. 예쁘게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본 파일 보내주시면 50% 잔금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그림 원본 파일이 전송되자 그 무렵 피고 B에게 잔금 47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원고 소속 그림 작가를 통하여 이 사건 그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이하 수정 후 그림을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이라 한다).

[수정 전]

[수정 후]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22. 5. 2. '피고 B이 이 사건 그림 원본 파일을 보내 준 이후에도 글 작가가 자꾸 수정을 요청하여 원고가 수정을 좀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2022. 5. 3. 이 사건 수정 후 그림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을 확인한 피고 B은 2022.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정이 되어 있어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도 없이 여러 부분을 수정한 것은 표지 작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완성 이후에도 납득 가능한 선에서의 수정 사항이라면 반영하여 수정해주고 있으니 다음부터는 미리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며 이 사건 그림의 수정에 항의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에게 '수정에 있어서 죄송하다. 원고도 처음에는 확정 지었었는데 일주일 뒤에 갑작스런 수정 요청이 계속되다보니 최대한 저희 선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원고는 2022. 5. 23. 이 사건 소설의 표지 그림을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으로 하고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의 저작자를 'G'로 표시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이 사건 소설을 출간하였다.

바. 원고는 2022. 5. 26.경 인터넷에 H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 소설의 표지 그림은 외주 제작으로 I님⁴⁾이 제작한 것이 맞는데, 캐릭터의 성격과 스타일을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얼굴을 수정하였다. 수정횟수 제한이 있고 재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I님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라 판단하였으며, 발주서에 그림의 저작, 활용은 발주사에게 있음을 미리 기재하였기에 수정에 관하여 I님의 별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소설의 런칭을 앞두고 I님에게 위와 같은 수정을 알렸는데, I님이 제작한 표지와 수정된 표지를 동시에 SNS에 올려 비교해도 되겠느냐고 하였고, 이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I님이 수정된 그림은 온전히 내 그림이 아니고 내 그림이 아닌 표지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하여 성명 표시를 I이 아닌 수정한 그림 작가의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등의 입장문을 게시하였다.

사. 피고 B과 자매로서 피고 B과 같은 작업실을 사용하는 웹툰 그림 작가인 피고 C은 2022. 5. 26.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해당 논란이 있었던 작품이 이번에 런칭된 F이라는 작품인 것 같은데, 표지 일러 마음에 안 든다고 무단으로 수정하고 메인 일러레 성명표기 안한 건 H팀에서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아님 J의 아이디어인가요? 이것도 해명해주시죠', '아무리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해도 저작인격권까지 포기한 건 아닙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아. 피고 B은 2022. 5. 27.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원고의 위 입장문을 첨부하며 '안

4) 피고 B의 활동명이다.



녕하세요. I입니다. H측에서 제가 한 말들을 인용하여 올린 입장문을 읽고, 저도 사실과는 다른 부분들을 바로 잡고자 몇몇 글들을 인용하여 입장문을 작성합니다. 해당 글은 어떠한 비난의 목적도 없으며, 사실에 기반한 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밑에 '수정된 그림을 보고 담당자이셨던 분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 이후에도 표지를 다른 걸로 바꿀 생각은 없다. 원본 그림과 리터칭 당한 그림을 SNS에 함께 올리는 것도 안 된다는 답변만을 고집할 뿐이었다. H의 입장문에는 제가 그림을 비교해도 되냐고 물어봤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저는 두 그림을 함께 올려도 되냐고 물었다. 수정횟수 제한이 있어 수정요청을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안내서에 일반적으로 총 2번 정도의 피드백이 진행된다는 말을 적었고, H 측에서 제게 요구한 수정은 적어도 4회 이상이므로⁵⁾ 수정횟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이해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저작권과 활용에 대한 내용만 있었지 저작인격권까지 포기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저는 일러스트 업계에서의 공익목적과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해당 글을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저작권과 창작자를 보다 더 존중해주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등의 입장문이 게시된 자신의 포스타입⁶⁾ 계정 링크를 올렸다.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전날 피고 C이 게시한 위 글을 리트윗하였다.

자. 한편 그림 작가인 피고 D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던 자신의 작품인 'K' 그림(이하 '이 사건 K 그림'이라 한다)이 'E' 작가의 포스타입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2022. 3. 22.경 'E' 작가에게 '그림 무단 사용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저는 이 사건 K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 트위터 외부에서 그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그림을 사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이 포스

5) 원고는 이 사건 그림과 관련하여 피고 B에게 총 4번의 수정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소장, 2024. 9. 24.자 항소이유서).

6) 웹소설, 웹툰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블로그이다.



트에 제2차 창작 팬아트가 다른 캐릭터로 리네이밍되어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다. 따로 그림 그려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였는데, 그분께서 본인이 그렸다고 말한 것이라면 그 그림 작가님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E'이 '네. 전달해드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 D은 '우선 포스트에서 제 그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아무리 모르고 계셨다지만 최소한의 사과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D은 다음 날 다시 'E'에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이 없어 다시 메시지 남긴다. 형식적인 답뿐만이 아니라 간단한 사과 한 마디라도 해주셨으면 기분이 이렇게 상하진 않았을 것 같다. 답신과 그림 작가님의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후 'E'은 피고 D에게 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차. 'E' 작가와 계약관계에 있는 원고의 담당 그림 작가는 2022. 3. 23.경 피고 D에게 '보조 그림작가로부터 이 사건 K 그림이 무료 이메레스⁷⁾라는 말을 듣고 이를 받았다. 그림 책임자로서 검증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메레스인 줄 알고 사용했다는 말씀에 대해 의문이 든다. E 작가 또한 피해를 입으신 입장이라 생각하나, E 작가가 자신의 포스타입 계정에 자신의 작품과 관련하여 게시한 포스트이니만큼 E 작가의 책임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E 작가에게 답신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과를 이렇게 요구리 찢러 받아야 하는가. 오늘까지는 기한이 너무 촉박하니 내일까지 E 작가의 답신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원고의 그림 작가는 피고 D에게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 다만, E 작가가 사과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 E 작가는 저희 회사와 계약한 작가이

7) 위에 덧그려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는 미완성 상태의 그림 틀을 의미한다.



며 전혀 이 상황을 몰랐고 몰랐던 부분에 대한 잘못은 저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카. 피고 D은 2022. 5. 26.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사과만 받고 끝낼 생각으로 긴 시간을 기다렸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데다 대화의 진행도 더 이상 되지 않았기에 대화 전문을 게시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그 밑에 그동안 피고 D과 'E' 작가 및 원고의 그림 작가 사이에 나눈 메시지, 피고 D에게 원고의 보조 그림 작가와 원고가 H라는 이름으로 보낸 메시지 내용이 담긴 'E 작가님과의 대화 전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세부적인 작업 지시에 따라 원고가 제시한 레퍼런스 그림을 모방하여 이 사건 그림을 제작하였고, 그 과정에 피고 B의 창작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그림의 저작권은 피고 B에게 있지 않고, 원고에게 있다. 설령 피고 B에게 이 사건 그림의 저작인격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그림을 추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하였고, 원고는 관행대로 실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 그림 작가를 통하여 이 사건 그림을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 B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바 없다.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그림의 수정에 항의하며 '이건 내 그림이 아니니 내 이름을 표시하지 말라'는 말을 하여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을 그린 이를 수정을 담당한



원고 소속 그림 작가로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 B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B의 저작권격권을 침해한 바 없음에도 피고 B, C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 B의 저작권격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 D은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는 'E' 작가의 포스타입 계정에 자신이 그린 이 사건 K 그림이 게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E'와 원고에게 항의하였고, 원고의 직원이 이 사건 K 그림을 펜아트로 착각하고 실수로 위 포스타입에 게재한 사실을 설명하며 수차례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고 D은 'E'에게 직접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다가,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수차례 사과를 받았음에도 'E'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원고와의 대화 내용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각 불법행위가 중첩되어 원고의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하락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매출 하락으로 인한 손해액 상당인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자

가)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나)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설의 표지 그림 제작을 의뢰하며 레퍼런스 그림을 보내고 피고 B의 작업 과정 중에 수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자는 피고 B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그림의 저작자는 피고 B이라 할 것이다[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인격권⁸⁾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인데(저작권법 제14조 제1항), 위 규정들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12. 14. 선고 92다3130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그림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그림을 창작하지 아니한 원고를 저작자로 할 수 없고,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가)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물에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이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저작권법 제12조) 타인에 의하여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표시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저작권법 제13조) 저작물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타인에 의하여 무단히 그의 저작물의 변경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원저작물을 원

8) 저작권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의미한다.



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나) 피고 B이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가지는 저작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그림 원본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피고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소속 그림 작가를 통하여 이 사건 그림을 수정한 점, ②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은 이 사건 그림 중 왼쪽 인물의 의상 디자인과 색깔, 오른쪽 인물의 얼굴 형태, 이목구비와 헤어스타일 및 배경 색채 등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그림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하였다거나 업계 관행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변경 권한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설의 표지 그림을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으로 하고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의 저작자를 'G'로 표시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이 사건 소설을 출간한 점, ⑤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은 이 사건 그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로 이 사건 그림의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그림의 복제에 해당하는 점, ⑥ 설령 피고 B이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의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동



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관하여 규정한 강행법규인 저작권법 제14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그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B, C의 불법행위 여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11579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



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나)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그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 C이 위 2의 사, 아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에 글 을 게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저작권격을 침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림 작가에게 소설 표지 그림 제작을 의뢰 한 출판사 등 회사가 그림 작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최종 완성물에 수정을 가하여 저 작물인 그림의 동일성을 해치고, 수정된 그림의 저작자를 제3자로 표시하는 문제는 공 공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B, C의 인터넷 게시 글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B, C이 인터넷 게시 글을 작성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앞서 원고가 인터넷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부분에 대한 정정과 다른 그림 작가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



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에게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C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가 피고 B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 D의 불법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림 작가에게 자신의 저작물인 그림이 상업적인 목적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저작자의 표시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되는 문제는 공공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D의 인터넷 게시글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 D이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주요한 동기는 저작물 무단 게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다른 그림 작가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에게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이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메시지 내용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가지는데, 원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그림을 수정하여 피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소설의 표지 그림을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으로 하고 이 사건 수정 후 그림의 저작자를 'G'로 표시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이 사건 소설을 출간함으로써 피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는바,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피고 B에게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 B의 이 사건 그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는 그의 명예와 감정에 손상을 입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원고의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의 경위 및 그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일 이후로서 피고 B이 구하는 2022. 5. 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4.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B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1-08

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세진

판사 김래니

판사 정세영